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32

제안년월일: 2023년 4월 27일
제 안 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줍깅 활동은 대표적인 환경 시민운동 중 하나로,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, 줍깅앱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○ 정의에 “줍깅앱”을 삭제함(안 제2조).

○ 줍깅 활동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6조, 제7조).

○ ‘줍깅의 날’ 지정 대신 ‘줍깅 주간’을 신설함(안 제8조).

○ 줍깅활성화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9조).

○ 일부 내용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함.

3. 참고사항: 생 략

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줍깅”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의 환경정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줍깅”을 “줍깅”으로, “마련하여야 한다”를 “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줍깅을 할”을 “줍깅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”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줍깅활성화계획에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, “사항을 포함한다”를 “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재원마련”을 “재원 마련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, 안 제8조를 제6조로 한다.

안 제6조(종전의 안 제8조)의 제목 “(줍깅의 날)”을 “(줍깅 주간 및 행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토요일을 줍깅의 날로 하고, 줍깅의 날”을 “토요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따른 줍깅의 날과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줍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”를 “행사”로 한다.

안 제10조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7조,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.

안 제9조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줍깅”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. 2. “줍깅앱”이란 줍깅에 참여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제작하거나 인정 또는 지정한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“줍깅”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.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환경정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줍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줍깅----------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----- 줍깅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----------.
제4조(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줍깅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② 줍깅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1.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.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. 재원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.·5. (생 략)	제4조(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) <삭 제> 시장은 ---------- 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. 1.·2. (제정안과 같음) 3. 재원 마련 ---------- 4.·5. (제정안과 같음)
제6조(줍깅 활동 인증 등) ① 시장은 줍깅 활동을 일정 기준 이상 달성한 자에 대하여 인증스티커와 뱃지를 제공하거나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줍깅앱을 활용할 수 있다.	<삭 제>

제7조(인센티브 제공) ① 시장은 줍깅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 1. 제6조에 따른 줍깅 활동을 인증받은 경우 2.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줍깅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. 1. 목표걸음 수 또는 목표 쓰레기 수거량을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 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	<삭 제>
제8조(줍깅의 날)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줍깅의 날로 하고, 줍깅의 날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의 날과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줍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줍깅 주간 및 행사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 토요일 ---------- ----------. ② ---------- 따른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행사---------- --------.
제9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줍깅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0조～제12조 (생 략)	제7조～제9조 (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환경정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줍깅”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줍깅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.

1.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
2.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
4.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줍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줍깅활성화 사업)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

2. 홍보·안내 및 교육 실시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줍깅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

2. 줍깅도구 등을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줍깅 주간 및 행사)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 등) 시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